

S & S New Letter on Feb 2009

<소득세법>

1. Official Letter No.16181/BTC-TCT 2008 년 12 월 31 일 발표), Official Letter No. 42/BTC-TCT (2009 년 1 월 2 일 발표)

1) 2009 년에 지급된 2008 년도 귀속소득

2008 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실 지급은 2009 년에 이루어지는 경우 (예를 들면, 2008 년도의 실적에 대한 배당 또는 2008 년도의 실적에 대한 상여 및 보너스 등) 적용되는 법은 2008 년도 현재 유효한 법임. 따라서 구법에 의해 과세소득이 아니었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지급시점이 2009 년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. 또한 2008 년도의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상여 및 보너스는 2009 년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008 년도 소득세 최종정산 시(2009 년 3 월 말까지) 합산하여 신고가 되어야 함.

2) 부동산양도소득

개인이 토지사용권 및 부수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을 2008 년도 중에 체결하였으나 양도절차가 2008 년도 중 완료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도 2008 년도 중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(토지 및 부수건물의 가치가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총 매각액의 4%), 2009 년부터 적용되는 신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.

APT 의 경우 계약서 싸인 및 대금결제가 2008 년도 중에 완료되었다면 더이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.

on tax management. **From February – May 2009, the Payer must not withhold PIT on income being paid to the Recipients.**

2. Circular 27/2009/TT-BTC (2009 년 2 월 6 일 공포)

본 규정에 따르면 2009 년도 1 월~5 월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유예 됨.

1) 거주자의 경우: 사업소득, 근로소득, 배당소득, 주식양도소득 및 로열티와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소득. 따라서 부동산양도소득, 복권 또는 게임에서 얻은 소득 및 상속 증여 등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.

2) 비거주자의 경우: 베트남에서 발생한 배당소득, 주식양도소득 및 로열티와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소득만 해당. 따라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은 납부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.

동 규정상 분명하지는 않으나, 6 월 30 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베트남을 떠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납부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, 현재 MoF 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음.

납부유예기간동안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. 노동계약 상 Gross basis, 즉 소득세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, 동 기간동안 소득세를 포함한 gross 금액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. 만약 net basis 로서 회사와 근로자간 추가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동 소득세는 일단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유예된 세금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는 5 월 국회에서 결정될 것임. 현재로서는 50% reduction 이 허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.

<부가세법>

1. Circular 04/2009/TT-BTC (2009 년 1 월 13 일 공포)

동 규정은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세 예비환급에 대한 내용으로서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됨. 현 부가세법 상으로는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서류 중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를 입증서는 서

류를 제출해야 했음. 그러나 동 규정에 따르면, 회사가 아직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환급대상 금액의 90%를 예비환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며, 나머지 10%는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음.

다음과 같은 경우는 환급허가 전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에 따른 예비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임.

-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부가세 환급
- 회사가 처음으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
- 환급신청 이전 2 년이내에 회사가 탈세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
- 분할, 합병등을 한 회사로서 미공제된 매입부가세 또는 과다납부한 부가세가 있는 경우
-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부가세 환급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물품에 대하여 계약서상 대금회수방법이 할부계약 등이어서 당장 은행 입금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환급대상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.

세무당국은 90%의 부가세 예비환급에 대해서는 유효한 서류가 제출된 후 7 업무일 이내, 10%의 최종 환급에 대해서는 4 업무일 이내에 환급조치를 해야함.

2. Circular 13/2009/TT-BTC (2009 년 1 월 22 일 공포)

동 규정은 특정 제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50% 감면조치로서 2009 년 2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.

현재 10%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50%의 감면조치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(즉 감면후 세율은 5%가 됨).

- 1) Mechanical engineering products, which are used production material (except for mechanical engineering consumer goods)
- 2) All types of automobiles
- 3) Spare parts of automobiles
- 4) Ships and boats

- 5) Cast moulds of all types
- 6) Automatic data processors (for example, computers, printers...)
- 7) Concrete products
- 8) Transportation (except for agency activities)
- 9) Tourism (in form of tour package contracts) and hotel services

3. Circular 129/2008/TT-BTC (2008 년 11 월 26 일 공표)

1) 매입세액공제 관련

9 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취득가액이 VND1.6B 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.

2 천만동 이상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한 조건들이 나열됨.

- 만약 해당 금액이 대여금과 상계되었거나, 공인된 제 3 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된 경우,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은행을 통한 결제로 인정
- 할부계약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시점에 금액 전액에 대한 은행 송금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증빙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. 그러나 할부기간 종료 시점에 전 금액에 대한 은행송금내역을 제시할 수 없다면 기존에 인정된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취소됨.
- 각 거래의 금액은 2 천만동 미만이나 여러거래가 동일거래처로부터 동일자에 발생하고 총 금액은 2 천만동을 초과한 경우에도 은행송금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.

2)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세

부동산 business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건설진척도 또는 계약서상 payment schedule 에 따라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, 각 수령시점에 VAT invoice 를 발행해야 함. 과세금액은 매도금액에서 토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됨.

<법인세법>

1. Circular 03/2009/TT-BTC (2009 년 1 월 13 일 공표)

동 규정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조치 중 하나로서 2009 년 2 월 27 일에 발효되나 적용기간은 2008 년 4 분기부터 2009 년 전기간임.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법인세 30% 감면 및 9 개월 납부유예이며,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용 조항은 없음.

1) 법인세 30% 감면

다음의 두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현행 세법에 의해 주어진 다른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한 후의 법인세에서 추가로 30%의 감면 혜택이 주어짐

A) 투자허가서 상의 정관자본금이 VND 10 billion 이하인 회사

B) 2008 년 4 분기 평균 종업원 수가 300 명 이하인 회사. 이때 3 개월 미만의 임시근로자는 계산에서 제외하며, 만약 2008 년도 4 분기에 신설된 회사라면 첫 매출발생 후 30 일간 급여가 지급된 근로자가 300 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본 감면규정은 위 A 또는 B 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business 종류와는 무관한 것임. 따라서 무역업 또는 서비스업 회사가 하더라도 본 감면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.

2) 법인세 9 개월 납부유예

위의 감면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는 납부유예 혜택도 누릴 수 있음;

- manufacturing, processing of agriculture, forestry, aquiculture;

- manufacturing of textile and footwear, and electronic components

2008 년도의 법인세 최종신고 시에는 감면금액 및 연장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신고양식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함. 회사가 여러 business 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유예의 적용이 가능한 business 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8 년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business 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음. 또한 회사가 2008 년도 4 사분기의 법인세를 수익 - 비용의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(주: 2008 년도는 4 사분기만 본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), 연간 법인세의 25%를 인센티브 적용대상 금액으로 간주함.

2. Circular 134/2008/TT-BTC (2008 년 12 월 31 일 공표)

기존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개정법규로서 외국법인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됨. 가장 중요한 변동은 기존 tax compliance 방법 중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던 hybrid method 가 삭제된 것으로서 기존의 deemed rate method 와 declaration method 만 존치됨. 2009 년 1 월 1 일 이전에 운영되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guideline 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. Declaration method 를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. A)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B) 계약기간이 183 일 이상일 것 C) Vietnamese Accounting System 에 따라 회계처리 할 것. 충족하지 못한다면 Deemed rate method 를 써야 함. 만약 베트남 내에 여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이중 어느 한 사업장이 이미 Declaration method 를 사용하고 있다면, 기타 사업장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Declaration method 를 사용해야 함.

3. Circular 130/2008/TT-BTC (2008 년 12 월 26 일 공표)

1) 법인세법 상 인정비용

- 비용불인정 항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으로서, 9 인승이하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로서 (일정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차량 제외) 취득가액이 VND1.6 billion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, 이 9 인승이하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손비불인정은 2009 년도에 등록된 차량의 2009 년도 감가상각비 분부터 적용됨.

- 연도말 현재 미지급급여로서 법인세 최종 연말신고기간(3 월말)까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다음해 급여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급여에 대한 총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총 급여의 17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됨.

- 보너스의 경우 급여의 성격이 아니거나, 또는 그 자격요건이 노동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.

- 회사 유니폼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 1 인당 VND1.5M 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VND 1M 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.

2)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비법인세

인프라 또는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 또는 리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정해진 일정 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선수금(계약금 증도금 등을 의미)을 받는 경우, 이러한 선수금을 받는 시점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. 만약 선수금에 해당하는 관련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, 그렇지 않다면 선수금의 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. 이렇게 사전에 납부한 법인세는 고객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시점에 정산해야 하며, 2009 년 이전에 이와 같은 선수금을 받은 회사는 2009 년도에 반드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.